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3.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울산광역시 산업로확장공사 입찰관련 8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9공동1130) (현대건설(주), 엘지건설(주), 한진건설(주), 남광건설(주), 한진종합건설(주), 일성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신화건설(주))</p>	<p>현대건설(주)는 울산광역시 산업로 확장공사의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98년 6월경에 엘지건설(주) 등 입찰참가예정회사를 초청하여 모임을 갖고 동 공사의 연구권을 주장하여 자신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모임에서 엘지건설(주) 등 입찰참가예정업체들은 현대건설(주)를 수주예정업체로 합의하고, 엘지건설(주) 및 한진건설(주)는 현대건설의 들러리 입찰참가 요청에 협조하여 정상적인 입찰에 대비하여 준비한 실제입찰내역서 대신 현대건설의 내용확인을 거친 바 있는 예정가격의 97% 이상으로 산출한 협조입찰내역서로 각각 입찰하여 현대건설(주)가 최저가 입찰자가 되어 동 공사의 적격심사 1순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사전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를 수주예정업체로 결정하고 동 수주예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들러리로 참가하여 동 수주예정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건설공사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11개 신문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9공동1447) ((주)경향신문사, (주)동아일보사, (주)매일경제신문사, (주)서울경제신문, (주)조선일보사, (주)중앙일보사, (주)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한겨레신문(주), (주)한국경제신문, (주)한국일보사, (주)현대문화신문)</p>	<p>(주)경향신문사 등 11개 신문사는 '98.8.21.과 22. 개최된 신문협회 판매협의회 임시이사회 등을 통해 '98.9.1.자로 신문의 월간구독료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96년 1월부터 400원으로 인상한 (주)매일경제신문사를 제외한 10개 일간지는 1부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문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국 일간지 및 경제지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나산유통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1광고1999)</p>	<p>(주)나산유통은 자신이 실시한 경품행사 내용에 대해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98.10.9.자로 「찬스, 두 번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실제로는 1</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일당 42천원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생략한 채 「코레스코콘도 1년 회원권(5명/년간 20일 무료사용 가능)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동 경품에 당첨되면 동 콘도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실제로 소비자가 동 콘도를 구입하려면 계약금 150만원에 월 20만원씩 100회를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생략한 채 「단 20만원으로 콘도를 구입하세요」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20만원만 투자하면 콘도 구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에 전지규격(78.8cm×109cm) 크기로 게재하여 7일간 공표토록 함</p>
<p>(주)태화의 부당한 광고 행위 (9811구사2047)</p>	<p>(주)태화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수도미터기보호통에 대해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함에 있어서 자신이 생산하는 상수도미터기보호통을 정부규격품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격품이라고 광고하였으며, 자신이 생산한 동 제품에는 진공으로 처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공처리되어 보온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기존의 타사제품 뚜껑의 재질이 석면 및 유리섬유 등과 같이 환경불친화적인 소재를 부자재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마치 기존의 타사제품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1999. 4.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대우중공업(주)의 신규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9901기업0061)</p>	<p>대우중공업(주)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한연장을 위한 재약정은 기존 채무보증을 포함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열회사인 경남기업(주)와 구 장기신용은행(현 국민은행)간에 '95.6.9.자로 체결된 100억원의 증장기사채 제공 약정과 관련하여 차주회사인 경남기업(주)에 대하여 130억원의 채무</p>	<p>◎ 신규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심 결 사 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보증을 제공하였으며, '98.6.27.자로 동 여신의 만기가 도래하자 경남기업(주)는 그중 5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하여 2회 분할상환조건으로 상환기일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재약정을 장기신용은행과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65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규채무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위반</p>	
<p>현대자동차(주) 및 현대자동차서비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9기획1574)</p>	<p>현대자동차(주) 및 현대자동차서비스(주)는 '98.8.24.부터 '98.9.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영업소 등에서 전단지 등을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경형승용차 「아토스」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하여 영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AUTOCAR」가 주관한 후진주행 테스트 및 국내 자동차 전문잡지 월간 「카테스트」가 주관한 「아토스·마티즈」 20,000km 내구 테스트 결과에 대한 잡지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마티즈 테스트 도중 전복! 치명적인 결함 드러나 ...”, “... 대우 마티즈가 안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마티즈는 시속 80km로 달리면 속도계의 오차가 최고 20%로 매우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규 최대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동 테스트 결과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경형승용차인 「마티즈」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크게 부각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였으며,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문잡지 「AUTOCAR」와 월간 「카테스트」가 주관한 경차테스트는 각각 법적 기준에 따른 공인된 정규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실제 운행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주행시험이며, 또한 동 잡지의 기사내용 중에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경쟁사의 「마티즈」가 안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기사내용에 「마티즈」가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광고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경차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중앙일간지 중 광고횟수가 많은 순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연명으로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주) : 568 · 현대자동차서비스(주) : 322

심 결 사 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우자판의 부당한 광고행위 (9809기획1575)	(주)대우자판은 '98년 8월 중순경 「광수생각」이라는 만화형식의 광고전단 10,000부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경형승용차인 「마티즈」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하이루프 형태의 경쟁사업자의 경차에 대하여 “기름만 무지 먹고, 허구헌날 혈떡대는 4기통 엔진”, “코너링시 생명보장 못하는 형편없는 경차임이 밝혀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경차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조선일보 등 21개 신문과 광고전단 등을 통해 「마티즈」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자사의 주장으로서 공식적인 시험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동차전문지인 「WHAT CAR」의 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마치 동 잡지에 「마티즈」가 주행시에도 주행안전성이 뛰어나고, 유럽 신안전법규인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테스트에서 별 3개를 획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처럼 표현하여 마치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거나 주행안정성이 뛰어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6호 위반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중앙일간지 중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01백만원</p>

1999. 4.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토지공사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등 (9811독관1983)	한국토지공사는 집행간부회의 심의 및 사장결재를 거친 「전사적 판촉활동 장려방안 세부시행기준」으로 “토지 매각·대금 회수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차등 확대방안”과 “전직원 1필지 매각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및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주)한국토지공사감리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99.4.11.부터 이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부서별 매각실적 등을 집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복도 등 주요 장소에 부착·게시하고 매각실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인사고과 가점부여·판매장려금 지급 및 미이행자에게서 삭감한 상여금을 개인평점비율로 배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였으며, 환매특약등기절차에	<p>◎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72백만원</p>

심 결 사 례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동 환매특약등기비용을 토지매수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한 단독주택용지 분양신청 예약금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p>	
<p>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의 불공정약관 관조항 (9811독관1984)</p>	<p>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96.12.4. 및 '97.5.27, '98.5.18. 시화국가산업단지 유수지 분양공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공고했던 토지사용가능일인 '98.6.30.까지 도로, 상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동 토지의 사용이 여의치 못하자 '98.6.29. 토지사용가능일을 '98.9.30.까지 연장하여 통지하는 등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토지사용가능일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3개월이나 지연되자 당초 토지사용가능일에 맞추어 입주계획을 추진하던 분양계약자 중 일부인 23개 업체가 동 토지사용가능일의 지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자 동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10억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물품제조구매시 주요 품목에 대하여 시운전을 통한 준공조건을 내세워 물품납품 후 물품대금의 10% 내지 30% 정도를 지급유보하고 시운전이 끝난 후 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품목의 구매시 시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유보금을 16일 내지 97일 후에 지연지급하였으며, 동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발주시에 수급자인 시공사가 보험회사의 서비스 수준이나 재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인 수급자에게 공사손해보험 가입보험회사와 보험요율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공사계약 체결시에 사용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하로 증액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에게</p>	<p>◎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정 또는 삭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98백만원</p>

심 결 사 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5호 전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1999. 4.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에스케이씨(주)의 거래거절행위 (9810독점1792)	에스케이씨(주)는 비디오리더테이프의 원재료인 DS10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사로부터 비디오리더테이프의 원재료인 DS10 등의 폴리에스터필름을 공급받는 전속대리점인 태립피티가 비포장용필름인 DS10을 삼본제업에 판매하는 데 대해 공급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동 공급중단으로 인해 비디오리더테이프의 원재료인 DS10의 구매가 어려워진 삼본제업은 에스케이씨(주)의 거래처인 신흥화학에게 DS10의 공급을 요청하여 '98년 6월말부터 '98년 9월초까지 DS10을 공급받자 '98년 9월 신흥화학에게 삼본제업에 대한 DS10의 공급을 계속할 경우 모든 폴리에스터필름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신흥화학으로 하여금 삼본제업에 대한 DS10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등 자신의 거래처 및 대리점으로 하여금 비디오리더테이프 판매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지시·요청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218,200천원
(주)성창F&D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0기획1874)	(주)성창F&D는 '95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이 분양하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밀리오레」상가에 대해 전단 등을 이용한 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서 상가의 경우 영업업종은 향후 기대되는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 모두를 회센타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회센타 및 스포츠용품으로 분양하였으며, 상가분양에 있어서 분양계약자는 독립적인 영업활동과 재산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1점포(구좌)별로 독립된 형태의 개별 매장으로 설치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3점포(구좌)를 1개 매장형태로 통합하여 설치하였으며, 전국에 걸친 체인점과 상설할인매장의 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영은 입점업체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점포주들이 계약의 체결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으로서, 동 상가가 개장된 '98년 8월 현재까지도 전국 체인점 모집이나 상설할인매장을 설치·운영된 사실이 없고 이를 위한 계획 등이 수립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오레」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자신의 전국 어느 체인점에서나 판매되고 재고는 모두 자신이 반입하여 전국의 상설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98년 8월 현재까지 제품 원자재 구매지원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추진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고 국내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북한 등 저임금 국가로 직접 대행발주를 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서울국제전화(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1광고1954)</p>	<p>서울국제전화(주)는 '98.10.19.부터 10.29.까지의 기간 중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6개 중앙일간지와 전문지인 전파신문 등 7개 일간지에 각 1회씩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국제전화요금을 경쟁사의 것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선불카드 우대회원 모집"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똑같은 35,000원으로 - 45분만 통화하시겠습니까? 270분을 통화하시겠습니까?"라는 표현과 "번번히 2시간 45분을 손해 봤단 말이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통신방식이 달라 자신의 국제전화가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에 비하여 통화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불편 등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만을 비교하면서 요금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별할인요금과 한국통신의 표준요금을 비교하여 광고하였으며, 국제전화의 이용시 이용자의 용건 등에 따라 통화시간과 요금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의 차이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확대하기 위하여 매번 자신의 국제전화선불카드 할인금액인 35,000원만큼 통화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선불카드요금과 한국통신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통화시간 및 이용요금의 차이를 비교하여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